

##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대상 확대!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 ① 지난 대선 여야가 약속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 소급적용 제외
- ② 현행법 상 중소기업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추경안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대상인 상황
- ③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온전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환 의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와 경영상 피해가 누적되며 온전한 손실보상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국민께 약속드렸으나 약속을 어기고 2차 추경 안에 이를 누락시켰다. 또한 손실보상의 대상도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그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여야 합의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 역시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만큼 피해를 입은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발의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1년 7월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드릴 뿐 아니라,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을 해드릴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밝힌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53조원에 달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힌 점으로 보아 재정 여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별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5. 19.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18292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5. .

발 의 자 : 의원(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현행 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회복 지원이 절실함.

특히 온전한 손실보상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도 충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

### 부 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 ----- <u>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u> ----- ----- ----- ----- ----- -----, <u>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연 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p>